

운영규정의 개편

(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시설의 기본정보

기관명	평화행복한데이케어센터	시설장	박찬미
기관기호	21135000128	급여종류	주야간보호
전화번호	02-949-0124	정원	정원 : 24명 인지지원등급 : 2명
홈페이지	https://cafe.naver.com/phhappy0124		
주소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3층		
직원현황	총 11명) 센터장 1명, 팀장 1명, 사회복지사 1명,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6명, 운전원 1명		

2. 비급여 항목 [식사비 · 간식비]

식사비	1식 4,100원 (오늘야채오늘도시락-위탁급식)	간식비	1일 1,600원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3.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(2026년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	32,49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	44,65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	56,360
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	56,360
13시간 이상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	56,360

4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기간 및 퇴소절차	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,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.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한다. 1.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.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: 이사, 해외이민, 보호자 변경 등 3. 센터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: 전염성 질환,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,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,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.
계약목적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센터는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센터에 대해 이용자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.
이용계약	① 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대상자관리 및 급여계획서, 변경계획서 2. 이용자의 권리 3.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. 전염성 질환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5. 기타 각종 동의서 및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 ③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, 제출하여야 한다. 1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.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. 주민등록등본 1부 4. 건강진단서 1부 5. 치매진단서(해당자) 1부 6. 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 1부

계약해지	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 ③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,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⑦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때 ⑨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⑩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⑩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,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,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,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	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.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, 표준 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한다. 2.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,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,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다.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. 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. 3. 인적사항 및 거주지,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. 4.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한다.